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협의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재해복구보조금 집행 잔액 활용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피해사실확인서 접수 기관을 읍·면·동으로 확대하여 피해 조사 기관과 피해사실확인서 접수 기관을 통일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을 조정하여 기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 잔액 활용 요건 마련(안 제38조 신설)

- 1) 재해복구사업의 집행 잔액을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협의 대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

나. 피해사실확인서 접수 기관 확대(안 제71조 개정)

- 1) 피해사실확인서 접수 기관을 읍·면에서 읍·면·동으로 확대하여 피해 조사 실시 기관과 피해사실확인서 접수 기관을 통일하도록 보완

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조정(안 별표1 개정)

-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지정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중 행정계획 대상에 추가
-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계
획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중 행정계획 대상에서 개발사업
대상으로 조정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설
치 중 2km 이상, 4km 미만의 임도의 설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예외에서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 잔액 활용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 잔액(이하 “집행 잔액”이라 한다)을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은 각 호와 같다.

1. 재해복구사업 중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
2. 집행 잔액이 발생한 재해복구사업과 동일한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행하는 보조사업
3.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업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집행잔액을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집행 잔액 활용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집행 잔액 발생 현황 및 사용계획
2. 집행 잔액 세부 사용계획
3.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재해복구보조금 변경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집행 잔액 활용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집행 잔액 활용의 승인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집행 잔액이 발생한 보조사업을 정산하려는 때에는 그 집행 잔액 활용의 승인 내역을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 집행 잔액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71조제1항 중 “읍·면장”을 “읍·면·동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0)의 협의 시기란나목바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지정

별표 1 제1호나목10)의 협의 시기란나목바목3) 중 “계획 승인”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에 사목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조성계획 승인 전
--	-----------

별표 1 비고 제1호 본문 중 “2킬로미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설치의 경우에는 4킬로미터)”를 “2킬로미터”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8조(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 잔액 활용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잔액(이하 “집행 잔액”이라 한다)을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은 각 호와 같다.</u> <u>1. 재해복구사업 중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u> <u>2. 집행 잔액이 발생한 재해복구사업과 동일한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행하는 보조사업</u> <u>3.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업</u> <u>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집행잔액을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집행 잔액 활용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u>

제출하여야 한다.

1. 집행 잔액 발생 현황 및 사용 계획

2. 집행 잔액 세부 사용계획

3.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재해복구보조금 변경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집행 잔액 활용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집행 잔액 활용의 승인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집행 잔액이 발생한 보조사업을 정산하려는 때에는 그 집행 잔액 활용의 승인 내역을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

제71조(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74조에 따라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피해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u>집행 잔액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u> 제71조(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① ----- ----- ----- ----- ----- ----- ----- ----- ----- <u>읍·면·동장</u>----- -----.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5118